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김 순 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요 약 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실현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주주총회제도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쉽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주주총회의 운영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은 촉진되더라도 주주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각 회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방법, i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의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후에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ii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전체를 전자화하는 방법(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등 세 가지 가운데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주주총회의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소집지 규정의 개정,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출석과 퇴장,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를 처리,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입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주주총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전자위임장, 의결권의 대리행사, 총회검사인

— <目 次> —

I. 서 설	5.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6. 출석(참가)과 퇴장
II.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및 개최동향	7. 본인 및 대리인 확인
1.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8.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2.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9. 동의의 처리
3.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11.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12. 위장(부정입력) 문제
III.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13.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1.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14.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15. 입법안 검토
3.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4. 소집지 규정의 개정	IV. 결 어

I. 서 설

2022년 12월 5일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전자주주총회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현장주주총회, 소집지 주주총회)¹⁾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를 병행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온라인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버추얼주주총회, Virtual Only Shareholder Meetings)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세분하여

1) 소집지는 최소행정부역을 의미하고, 주주총회는 소집지 내의 소집장소에서 개최되므로 현장주주총회는 ‘소집장소가 정해진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참여하는 주주에게 출석 및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는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된다.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00년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11조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참가를 촉진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장주주총회에서와 같은 회의체로서의 실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예상과는 달리 전자주주총회는 그 발원지인 미국에서조차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 19가 유행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현장주주총회를 탈피하여 가상공간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국면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ESG에 대한 관심 증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 진전, 의결권행사 플랫폼의 단순화, 차세대 주주들의 기대 등으로 인해 향후 전자주주총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매우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나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만 가능하고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도입한 회사는 3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³⁾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 문제를 다룬다. 우선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동향,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II.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및 개최동향

1.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중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원격지 등 현장주주총회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주주가 주주확인을 거쳐 특설된 웹사이트 등으로 송출된 중계 동영상을

2) 이러한 분류방식은 2015년 이후 전자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일본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3. 4. 26. 보도자료, 3면.

방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참가하는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법상 출석한 주주에게 인정되는 질문권, 동의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사실상 판명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는 질문, 동의, 의결권의 행사보다도 경영진으로부터 사업전략에 관해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지는 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경영정보 제공과 회의장소 선택지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⁴⁾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는 원격지 등 현장주주총회 장소에 소재하지 않은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현장 출석주주와 함께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개최장소와 주주 간에 정보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는 인터넷 수단을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제368조의4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아니며, 소집통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의 회의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으로 출석한 주주도 발언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장대체형과는 달리 기존의 물리적 총회 준비⁶⁾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까지 준비⁷⁾까지 이중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이를 선택할 유인이 매우 낮다. 그 이외에도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투표권 및 질문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주총회 당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의결권행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불안정이 초래된다. 통신시스템 등 기술적 환경정비도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며, 의결권행사나 동의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시청률이 낮으며, 총회 운영 부담이 크다고 지적된다. 또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참가형이 유용하며, 안정적인 송신환경의 정비나 운영에 불안이 있다는 것이다.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라 함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이사 등이나 주주가 인터넷 등의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회사법상 '출석'하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따라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물리적으로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고자 하더라도 출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4) 經濟産業省,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施ガイド」, 2020. 2. 26(이하 “실시 가이드”라 한다), 8면.

5) 經濟産業省, 실시 가이드, 11면.

6) 회의장 준비, 현장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준비, 출석 주주 대응,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등.

7) 총회 운영 지원을 위한 웹서비스의 검토, 투표권 및 질문권 행사에 필요한 서비스 구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 필요한 통신장비의 구매, 총회 당일 온라인 참가자와의 소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나리오 마련 등.

8)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2年版)」, 「商事法務」 第2312号(2022), 178면.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외부에 중계하는 주주총회의 인터넷 공개 사례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주총회를 외부로 중계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참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기는 하지만, 서면 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제도(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제도)가 있다. 서면결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상법 제363조 제4항 내지 제6항)와 유한회사(상법 제577조)에 대해 인정된다. 이러한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중에서 본래 주주총회라는 회의체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경우만이다.⁹⁾

2.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Intelligiz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각종 신고서를 활용하여 미국 전체 상장회사 중 현장대체형 및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수를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49%, 2021년 71%, 2022년 8월말까지 68%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S&P 500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2021년 85%, 2022년 69%가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주주총회가 주주 수가 소규모인 회사에 더 적합하다고 보며, 그동안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종결되더라도 전자주주총회가 급속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¹⁰⁾

<미국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¹¹⁾

[단위 : 개사, %]

	전체회사	전자주총	비율(%)	S&P 500	전자주총	비율(%)
2018	4,874	257	5.27	500	44	8.80
2019	4,889	299	6.12	500	52	10.40
2020	4,849	2,392	49.33	500	286	57.20
2021	4,748	3,383	71.25	500	425	85.00
2022.1.~8.	4,499	3,077	68.39	500	346	69.20

9)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70~172면; 岩村充・坂田繪里子, “わが國における株主總會電子化の可能性と課題”,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65~66면.

10) Mark T. Wilhelm & Danielle Clifford, “Zooming in: Analyzing Annual Meeting Format Changes Amidst a Global Pandemic”, 80 Wash. & Lee L. Rev. Online 227, 234, 241 (2023).

11) Mark T. Wilhelm & Danielle Clifford, op. cit., p. 235.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제공회사인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횟수가 플랫폼 개설 첫해인 2009년에는 4회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87회, 2017년 236회, 2018년 285회, 2019년 326회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1,957회로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2,377회, 2022년에도 2,300회 이상의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주주총회 시즌의 경우 코로나 19 환경은 더이상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며,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진보, 플랫폼의 단순화, 차세대 주주의 기대 등이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Broadridge사의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¹²⁾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자주주총회 회수(회)	187	236	285	326	1,957	2,377	2300 이상
증가율(%)		26.2	20.8	14.4	500.0	21.5	

2021년에는 2,210개사가 2,377회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그중 98%가 현장대체형을, 2%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한 회사 중 27%가 신규로 채택한 회사이다. 실시간 질문을 허용한 회사는 95%, 사전질문을 허용한 회사는 2%이며, 전자주주총회 개최 중 평균 질문회사는 7회이다. S&P 100에 속하는 회사의 85%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경우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는 2020년 81개사(5.1%)에서 2021년 281개사(16.1%), 2022년 379개사(19.8%)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는 2020년 7개사(0.4%)에서 2021년 19개사(1.1%), 2022년 19개사(1.0%)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출석형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통신두절이 될 경우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될 위험성이 있고, 현장 및 가상공간이라는 2개의 주주총회를 준비해야 하므로 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¹³⁾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로는 주주에 대한 출석 또는 참석 기

12)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1 full-year facts and figures,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sm-2021-full-year.pdf>;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2 mid-year facts and figures,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shareholder-meetings-report-2022.pdf>(2023. 7. 18. 최종방문)

13) 中川雅博, "バーチャル株主總會實施事例に見る實務對應と留意点 - 出席型バーチャル總會, バーチャルオンリー總會 -, 「資料版/商事法務」 第452号(2021), 25면.

회의 제공, 신형 코로나 대응, 주주를 중시하는 자세 홍보, 주주와의 대화 충실, 주주총회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¹⁴⁾

〈일본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현황〉¹⁵⁾

[단위 : 개사]

연 도	2020	2021	2022
현장병행형(참가형)	81	281	379
현장병행형(출석형)	7	19	19
현장대체형	-	-	28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현재 52개의 일본 상장회사가 총 66회에 걸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411개의 상장회사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정관변경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¹⁶⁾ 상장회사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수의 주주가 참가하여 회의체성을 확보하는데 불확실성 및 불명확성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의결권자문회사인 ISS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정관변경에 대해 ‘감염병 확대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가 2022년 28개사에서 2023년 6월말 현재 52개사로 증가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면서 점차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4)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2年版)」, 「商事法務」 第2312号(2022), 181~182면.

15) 현장병행형에 관한 자료는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0年版)」, 「商事法務」 第2256号(2021), 182~183면;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1年版)」, 「商事法務」 第2280号(2021), 179~180면;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2年版)」, 「商事法務」 第2312号(2022), 178, 180면 등 참조. 현장대체형에 관한 자료는 小川周哉·太郎田耀,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現状と課題”, 「資料版/商事法務」 第467号(2023), 70면 참조.

16)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場所の定めのない株主總會 - 制度説明資料 -”, 2023. 7., 6면.

17) 小川周哉·太郎田耀, 前掲論文, 70~71면 참조.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 개최현황〉¹⁸⁾

[단위 : 개사]

연 도	2021	2022	2023
유가증권	21	25	29
코스닥	3	3	5
합계	24	28	34

우리나라에서는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만 개최되고 있다. 2021년 24개사, 2022년 28개사, 2023년 34개사로 소폭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한 회사의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3.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식 및 유형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2022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전자화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638개사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으로 바람직한 방식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92개사, 77.7%).¹⁹⁾

〈바람직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개사, %)

응답	회사 수*	비율
법률적 근거만 마련하고 도입은 회사가 자율 선택	492	77.7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 의무화	141	22.3
합계	633	100.0

* 미응답(5)

18) 이승희, “2021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ERRI 이슈&분석」 2021-02호(2021), 6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전계 보도자료, 3면.

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LCA ISSUE PAPER」 Vol. 77(2022)(이하 “설문조사결과”라 한다), 14~15면.

만약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된다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현장대체형을 가장 선호하였다(279개사 44.2%). 반면 현장병행형(출석형)의 경우 현장과 가상공간에서 동시에 시행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를 부담하게 되고, 예민한 안전에 대해 침해한 대립이 생길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현장에서의 의결정족수 산정 등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실무적 문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78개사, 12.4%). 현장병행형(참가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비추얼 방식의 주주총회로 가야 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출석형’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참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274개사, 43.4%).²⁰⁾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시 가장 합리적인 방식〉

(개사, %)

응답	회사 수*	비율
현장대체형	279	44.2
현장병행형(참가형)	274	43.4
현장병행형(출석형)	78	12.4
합계	631	100.0

* 미응답(7)

나.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우려사항

현장병행형(출석형) 또는 현장대체형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통신장애 등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429개사, 67.2%), 당일 전자투표 행사로 인한 안전에 대한 가결 여부가 변동할 가능성(386개사, 60.5%), 전자주주총회 운영요령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296개사, 46.4%) 등이었다.²¹⁾

2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설문조사결과, 15면.

2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설문조사결과, 16면.

〈현장병행형(출석형) 또는 현장대체형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

(건, %)

응답	응답 수*	비율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통신장애 등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결의 취소의 소 사유) 발생 문제	429	67.2
당일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가결 여부에 대한 변동 가능성 확대	386	60.5
주주의 출석 방법, 질문권 제한, 초상권 문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가이드 부재	296	46.4
안정적인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제공업체의 부재	175	27.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 부담	129	20.2
기타**	9	1.4
합계	1,424	-

* 중복응답 ** (문항별응답수)/(응답한 회사 수(638개사))

*** 모든 항목이 우려됨(2), 예측 불가능(1), 그 외(6)

Ⅲ.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1.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는 현행 상법 아래에도 허용되며,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²²⁾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²³⁾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입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²⁴⁾

22) 권용수,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19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7판]」, 박영사, 2023(이하 “회사법”이라 한다), 342면; 김순석, 전게서, 34면; 김신영,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21), 44면; 박상근, “인터넷과 주주총회”,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2001), 109면; 윤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16), 89~90면. 반면 현장병행형 및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Ⅱ[제4판]」, 법문사, 2022, 285면(김병태 집필부분) 참조.

23)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하므로(상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주주총회 당일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황현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예탁결제」 제124호(한국예탁결제원, 2023), 25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는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제363조) 및 소집지(제364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²⁵⁾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로 인하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주주총회²⁶⁾를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도입하는 경우 그 형식을 회사가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인지(opt-in), 아니면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정관으로 배제하도록 할 것인지(opt-out)가 문제된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opt-in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²⁷⁾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⁸⁾ 따라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정관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opt-out). 그러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를 충분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을 한 다음 도입해야 할 것이다(opt-in).

2.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허용되는 회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일본은 특별법을 통해 주주 수 100인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하여 통신상이나 디지털 격차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정부의 확인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²⁹⁾ 상장회사에 한정된 이유는 주주의 수가 많고,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효율화·원활화의 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서 주주총회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다.³⁰⁾

24) 동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22, 19면.

25) 자세한 내용은 김순석,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2017)(이하 “전계논문 I”이라 한다), 26~28면 참조.

26) 전자주주총회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27) 김신영, 전계논문, 62~63면; 윤영신, 전계논문, 85면. 캐나다 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 132(4), (5))과 덴마크 회사법(Danish Act on Public and Private Limited Companies §77(1), (2))도 마찬가지이다(윤영신, 전계논문, 75~76면).

28)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전자화시대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2004), 305면; 윤영신, 전계논문, 86면.

29) 후술하는 III.14.나.3) 참조.

30) 白岩直樹,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場所の定めのない株主總會(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に関する制度の解説”, 「商事法務」 第2269号(2021), 6면.

반면 미국은 2000년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를 수용하고 있다.³¹⁾ 독일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³²⁾ 프랑스는 현장주주총회의 개최가 총회참가권 및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비상장회사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의 입법안으로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 또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을 두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된다.³⁴⁾ 또한 현장대체형은 총주주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다.³⁵⁾

전자주주총회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다르지 않으므로 도입하는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허용해야 할 것이다.³⁶⁾ 또한 주주의 수나 회사규모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여부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전자주주총회는 각 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 그 선택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법률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주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이다. 즉,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 간에 정보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통신수단 등 적절한 체제를 구축하고, 질문권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사운영규칙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3.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송수신 방법을 음성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음성과 영상(동영상)을 동시에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본의 실시가이드는 전자주주총회에 활용하는 인터넷 수단을 “물리적으로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출석한 자 이외의 자에게 주주총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화, 이메일, 채팅, 동영상 전송 등 IT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수단”으

31) 허원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03면.

32) 후술하는 III.14.나.2) 참조.

33) 권용수, 전게서, 71면;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デジタル株主總會の法的論点と實務」, 商事法務, 2023, 89면.

34) 권재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방향”, 「디지털 경제와 상사법의 과제」(한국상사법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 6. 30.), 43면.

35) 황현영, 전계논문, 30면.

36) 김신영, 전계논문, 64면; 허원준, 전계 학위논문, 210면; 황현영, 전계논문, 32면.

로 정의하고 있다.³⁷⁾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동영상 전송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전화회의나 인터넷을 통한 음성 전달 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³⁸⁾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음성과 영상을 병용해야 하는지 또는 음성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브로드리지사(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최된 2,377회의 전자주주총회 중 98%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2%가 현장병행형을 채택하였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98%가 통신수단으로 음성만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만이 영상을 활용하였다.³⁹⁾

통신수단을 선택하는 데는 시스템 장애로 통신(특히 동영상)이 두절될 경우에 총회결의가 부존재나 취소사유에 해당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통신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부담의 측면, 주주의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외국에서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입법동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주주총회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음성에 추가하여 동영상에 의해 의장과 출석주주 사이 및 출석주주 상호간에 실시간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동영상이 두절된 때에는 곧바로 총회결의의 부존재나 취소가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⁴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i) 적어도 음성에 의해 의장(회사)과 출석주주 사이에 정보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고, ii) 적법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주주의 질문을 다른 주주가 대체로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확보된다면 주주총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상에 의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산경법도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⁴¹⁾

주주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출석주주 상호간에 동영상에 의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전화가 폭주하여 총회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석주주 상호간에 음성으로 통화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출석주주 상호간에는 정

37)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2면.

38) 동법은 일본 경제의 부흥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영향을 주었다(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호(법무부, 2018), 87~88면). 2021년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회사법의 특례로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있다(후술하는 III.14.나.3) 참조).

39)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1 full-year facts and figures, p. 2,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sm-2021-full-year.pdf>

40)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74면 각주 61).

41) 太田洋,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實務對應[上], 「商事法務」第2259号(2021)(이하 "前掲論文[上]"이라 한다), 20면.

보전달의 즉시성과 쌍방향성까지 확보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적법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주주의 질문내용을 다른 출석주주가 대체로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일 질문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없더라도 의장이 질문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거나,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된 질문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이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본다.⁴²⁾

한편 주주가 회사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전달을 하는 데에 음성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앱의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제된다. 이때에도 질문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회사에 전달되어 회사가 이를 확인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정보전달의 즉시성과 쌍방향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도 적법하다고 해석된다.⁴³⁾ 즉, 회사로부터 출석주주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과 출석주주로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이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

다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최근 동향이 단순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IT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주주총회 플랫폼이 단순화하고, 젊은 세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음성과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 바람직할 것이다.⁴⁴⁾ 결국 전자주주총회 통신수단의 선택은 각 회사가 처한 상황 즉, 회사의 규모, 주주의 수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⁴⁵⁾

4. 소집지 규정의 개정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4조는 일본 구상법 제233조를 계수한 것으로 일본 상법의 경우 당초 소집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38년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⁴⁶⁾ 2005년 회사법을 제정할 때 삭제되었다.

삭제된 이유는 주주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본점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과 정관에서 미리 정하지 않는 한 소집지가 한정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집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주주의 분포상황에 따라 출석하는 주주 수 등을 감안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

42) 太田洋, 前掲論文[上], 20면 각주) 10.

43) 김신영, 전계논문, 65면; 太田洋, 前掲論文[上], 20면. 다만 텍스트 입력에 어려움이 있는 출석주주를 위해서는 질문용 전용 접수 전화번호를 두고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4) 동지, 김신영, 전계논문, 66면; 허복녕·권한용,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법적 선결과제 연구”, 『경희법학』 제56권 제2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58면.

45) 권용수, 전게서, 143면;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47면; 황현영, 전계논문, 38면.

46)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編, 『新版注釋會社法(5)』, 有斐閣, 1986, 86면.

도록 한 것이다.⁴⁷⁾ 그러나 일본은 소집지 규정을 철폐하였지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소집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장소를 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29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장소가 필수적이며, 현장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즉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행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다.⁴⁸⁾⁴⁹⁾ 이에 따라 특별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여 '장소를 정하지 않은 주주총회(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제도가 주주 수가 100인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창설되었다(산경법 제66조).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 일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집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⁵⁰⁾

그 이외에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위해서도 소집지 규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그 기원이 된 일본 회사법의 관련 조항도 2005년 이미 삭제되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하여 외국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주주가 외국에만 존재하는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만일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관으로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만에 의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때에는 이사회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⁵¹⁾ 소집지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47) 相澤 哲・細川 充, “株主總會等”, 「立法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説(相澤 哲 編)」, 別冊商事法務 No.295 (2006), 79면.

48) 倉橋雄作, “バーチャルオンリー總會の實務對應[上]—實施企業へのヒアリングを踏まえて—”, 「商事法務」第2285号(2022)(이하 “前掲論文[上]”이라 한다), 32면.

49) 第197回 國會衆議院法務委員會議錄 第2号(2018年 11月 13日)에 있어서 小野瀬厚政府參考人(法務省民事局長(當時) 答辯. 물리적인 회의를 두면서 인터넷 수단에 의한 참가·출석도 허용되며, 소위 하이브리드형 비주요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실무적 논점의 정리나 실시사례 등에 대해서는 經濟産業省,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施ガイド」(2020. 2. 26) 및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施ガイド(別冊)實施事例集(2021. 2. 3.) 참조.

50) 동지, 정준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검토 -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법무부, 2017)(이하 “전개논문 I”이라 한다), 163면.

51)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11(a)(1)조 참조.

5.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상법은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참가에 대해서는 출석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 제2항).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68조의3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출석의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출석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요건에서 의결정족수 산정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제368조 제1항, 제434조).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요건에서 규정한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미국 델라웨어 일반회사법은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not physically present at a meeting) 주주 및 위임장 소지인이 원격통신수단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1(a)(2)b.조). 영국회사법은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며(동법 제311(1)(b)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을 인정하고 있다(제360A(1)조).

우리 상법상 출석은 제364조의 소집지 내의 물리적인 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것을 주주총회의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⁵²⁾

6. 출석(참가)과 퇴장

전자주주총회의 출석과 퇴장은 회사가 발부한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로그아웃하면 퇴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일단 로그인을 하면 퇴장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속행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된다.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관규정은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형평

52) 박준선, "비주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31집 제4호(한국경영법학회, 2021), 27면; 윤영신, 전제논문, 92~93면; 허원준,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6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22), 275면.

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결권행사자를 확정하고 총회결의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즉, 의장이 의안결의에 들어간다는 선언을 한 후에는 로그아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⁵³⁾

한편 현장주주총회와 가상공간 주주총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가상공간 주주총회에 참가하던 주주가 현장주주총회로 참가형태를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특정한 주주의 의결권이 이중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총회 참가형태의 변경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는 의결권의 이중행사가 발생한 경우 어느 총회에서 행위가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⁵⁴⁾

전자주주총회에서 총회 참가자의 출석·퇴장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의사운영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⁵⁵⁾도 있으나,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주주의 필요성이 큰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⁶⁾⁵⁷⁾

7.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가. 주주 확인

현장병행형(출석형) 및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가상 출석할 수 있는 주주는 기준일 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에 한정되므로, 현장주주총회 의장에 출석하는 주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주주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은 원격통신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주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것으로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일본회사법은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시기이드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본인확인의 경우 사전에 주주에게 보낸 의결권행사서면 등에 주주별로 고유한 ID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보내고,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으로 로그인할 때

53) 윤영신, 전계논문, 95면; 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1~72면.

54) 김순석, 전계서, 36~38면; 권종호, “버추얼주주총회의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05), 121~122면; 윤영신, 전계논문, 96면; 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1~72면.

55) 柴田和史·神田秀樹, “電子株主總會への展望”,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139면.

56) 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1면 주) 10.

57) 김순석, 전계논문 I, 29면.

58)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 § 211(a)(2).

에 그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로그인을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본인확인 은 기본적으로 전자투표에서의 본인확인 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⁵⁹⁾ 한편 통신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한 후에 소집통지에 기재된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당해 전자주주총회의 송신이 이루어지는 전화회의 시스템에 로그인함으로써 출석하는 것으로 취급된다.⁶⁰⁾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로 거짓 행세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주소로 우송된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된 주주 고유의 ID와 패스워드의 입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2단계 인증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주주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⁶¹⁾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장 총회의 실무에서는 주주의 주소로 송부된 주주총회 참석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총회장 입구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입장이 가능하다.⁶²⁾

다만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규정한 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개정 전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⁶³⁾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개정되었다. 즉, 전자투표를 할 때 주주는 ① 전자서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또는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⁶⁴⁾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여기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 를 하는 자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는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59)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6면.

60)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8면.

61)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8면.

62) 김신영, 전계논문, 72면.

63) 김순석, 전계논문 I, 16면.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9조 제1항).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후단, 제10조 제1항).

이처럼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이동통신사, 카드회사 등을 통한 본인확인 물론이고, 지문인증과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⁶⁵⁾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는 ID와 패스워드로 충분하며, 본인의 진위 여부는 회사가 휴대폰, 신용카드, 지문인식, 홍채인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나 SKT는 주주총회 전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사전에 주주정보를 입력하여 주주 인증을 하면 그 주주에게 접속코드를 부여하고, 주주는 주주총회 당일에 해당 접속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주확인을 하였다.⁶⁶⁾

전자주주총회 출석주주의 본인확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전자투표에서의 본인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⁶⁷⁾

나. 대리인 확인 및 대리권의 전자적 수여 제도(전자위임장) 도입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주주 본인은 현장주주총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가상공간 출석이 가능하며, 현장주주총회 회의장에 출석하고자 하면 대리인을 회의장에 출석시키면 해결되므로 일부러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할 필요성은 적다. 이처럼 가상공간 출석의 경우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에 시간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주주총회의 대리인 출석에 비하여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요청은 적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장병행형(출석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본의 실시가이드에서는 대리출석을 현장주주총회에 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⁶⁸⁾ 이러한 한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소집통지에서 주주에게 대리인의 출석은 현장주주총회에 한정한다는 뜻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시킬 수 없으므로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회사가 대리인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병행형(출석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모두 회사가 임의로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장주주총회

65) 권재열, “2020년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92호(대한변호사협회, 2020), 102면; 정준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한국법정책학회, 2020), 468면.

66) 김신영, 전계논문, 72~73면; 조중일·신동일, “온라인 주주총회”, 「BFL」 제114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51면.

67) 황현영, 전계논문, 33면.

68)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6면.

에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의 대리인자격 확인 방법⁶⁹⁾에 준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의결권행사서면 원본을 사전에 회사에 송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취급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회사법 제298조 제1항 제5호 및 일본회사법시행규칙 제63조 제5호의 적용에 따라 또는 그에 준하여 대리인에 의한 가상공간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고 있다(개정산경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대체 적용된 회사법 제298조 제1항 본문 참조).⁷⁰⁾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의 하나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68조 제2항). 따라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대리인에게 가상공간 출석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면 제368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상공간 출석의 특성상 대리인의 출석을 인정할 필요성은 적은 반면, 대리인 본인의 확인 처리는 실무상 번잡하고 비용도 크다. 따라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대리인 출석은 현장주주총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¹⁾

회사가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접수받은 때에는 현장주주총회에서 대리인 출석의 경우 본인확인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주주총회에서 대리인 출석의 경우 주주총회 당일 또는 전일까지 i) 위임장과 위임자의 본인확인 서류(위임자의 의결권행사서면)를 회사에 제출하고, ii) 대리인 본인의 의결권행사서를 제출하는 것(대리인의 자격을 정관에서 주주로 한정된 회사의 경우)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접수받은 때는 위임자로부터 메일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령한 후에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⁷²⁾ 그러나 상법은 전자위임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상출석한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전자위임장을 활용할 수 없다. 전자문서의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전자위임장을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급하는 견해도 제기된다.⁷³⁾ 그러나 위조방지를 위하여 위임장의 서면성을 엄격하게 취급하는 대법원 판례⁷⁴⁾에 비추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36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위임장의 전자적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⁵⁾

69) 주주총회 전일까지 또는 당일에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의결권행사서면 원본을 제출하고, 더불어 대리인 자격을 정관에서 주주로 한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수임자 본인의 의결권행사서면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다.

70)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9~290면.

71) 권용수, 전계서, 146면; 經濟産業省, 실사가이드, 16면.

72) 經濟産業省, 실사가이드, 17면.

73) 윤영신, 전계논문, 106면.

7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75) 구체적인 입법안은 후술하는 김병욱 의원 발의 상법 개정법률안 참조(Ⅲ.15.나.1) 참조. 자본시장법상 전자위임장 근거조항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김순석, 전계논문 I, 23~25면 참조.

주요국의 입법례도 주주가 전자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은 주주가 전보, 해저전신, 기타 전자적 송신수단(other means of electronic transmission)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1990년에 도입하였다(동법 제212(c)(2)조).⁷⁶⁾ 독일주식법도 대리권의 부여, 철회 및 회사에 대한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형식이 필요하지만, 정관이나 정관의 수권에 근거한 소집통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리권 수여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34조 제3항 제3문). 영국회사법은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 서면을 제공하거나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할 때 전자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대리인의 지명, 대리인 지명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그 주소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신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3조 제(2)~제(3)항). 일본회사법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때 주주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전자위임장)의 제공에 대신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주 또는 대리인은 당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일본회사법 제310조 제3항). 전자적 방법이란 메일송신, 웹사이트 입력, 전자디스크 등의 교부를 말한다(일본회사법 제2조 제34호, 회사법시행규칙 제222조). 전자위임장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회사에게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회사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6호). 승낙을 요구하는 자가 전자소집통지를 승낙한 주주인 때에는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일본회사법 제310조 제4항).

8.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주주총회 회의장에 출석한 주주가 의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설명을 듣는 것은 회의체로서의 일반원칙상 당연하다.⁷⁷⁾ 다수결은 적법한 의사운영절차의 결과인 때에만 회의체의 의사로서 가치를 가진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의사운영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정신을 기조로 한 것이어야 한다. 회의체의 일반원칙으로서 의안의 제안자가 제안이유를 설명하거나, 질문을 받고 대답하여 의안의 찬부의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⁷⁸⁾

우리 상법에는 주주의 설명청구권이나 이사·감사 등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주주권에 내재하는 권리로서 주주는 질문권을 가지고, 임원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⁷⁹⁾ 정당하게

76) Edward P. Welch, Andrew J. Turezyn & Robert S. Saunders,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5th ed., Wolter Kluwer, 2008, §213.3.2.

77) 田中亘, 「會社法[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21, 191면.

78) 江頭憲治郎·中村直人, 「論點体系 會社法 2」, 第一法規, 2012, 491면.

79)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1판]」, 박영사, 2023(이하 “회사법강의”라 한다), 568면. 독일주식법은 주주의 설명청구권(동법 제131조), 일본회사법은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4조).

행사된 주주의 설명청구를 무시한 경우 당해 주주가 관련 임원 및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의안과 관련성에 따라서는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질문기회를 전혀 주지 않거나 설명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현저하게 부실한 설명을 한 경우 등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제1항)를 제기할 수 있다.⁸⁰⁾

가. 질문의 접수방법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현장주주총회와 차이가 현저한 부분이 질의응답이다.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는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와 마찬가지로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따라야 하지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는 질문자의 지명에 대해 현장주주총회처럼 거수한 주주 가운데 의장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실무상 한층 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예컨대, 줌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거수한 주주 중에서 의장이 질문자를 지명할 수 있다).⁸¹⁾

이에 따라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 질문을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전술한 방식 이외에 ①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송신하는 방법(포탈을 통하여 시스템상의 양식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메시지를 송신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거나,⁸²⁾ ② 전화나 인터넷을 경유한 음성을 이용하는 방법(전용 접수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방식이나 웹 회의용 앱의 통화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거나,⁸³⁾ 또는 ③ 이러한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⁸⁴⁾ 음성을 교환하거나 영상을 첨부하여 교환하는 방식은 주주 간에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을 집단으로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인 Broadridge사 모델은 인터넷 화면에서 질문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⁸⁵⁾ 일본에서도 영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⁶⁾

8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331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569면.

81)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31면.

82)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21면.

83) 회의장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질문이 있는 주주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콜센터 직원이 전화가 온 사실을 의장에게 전달하는 체제이다.

84) 太田洋,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實務對應[下], 「商事法務」第2260号(2021)(이하 “前掲論文[下]”라 한다), 42~43면.

85)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1 full-year facts and figures, p. 2,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sm-2021-full-year.pdf>.

86) 倉橋雄作, “バーチャルオンリー總會の實務對應[下]—實施企業へのヒアリングを踏まえて—, 「商事法務」第2286号(2022)(이하 “前掲論文[下]”라 한다), 44면.

나. 사전질문과 총회 당일의 질문 접수기한

질문의 접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 또는 총회 전의 일정한 일자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접수방법으로서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의장이 가상공간으로 출석하고 있는 주주를 지명한 후에 지명된 주주가 질문의 내용이나 채팅을 입력하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의사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질문을 희망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가 준비한 입력양식에 질문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중 회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을 선별하여 회답이나 소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운영의 관점에서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 전의 사전질문 제도가 회사법상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다. 즉, 사전질문을 이사의 설명의무가 수반되는 회사법상의 정식의 '질문'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가상공간 주주총회의 출석주주는 총회의 개최 중에 회사 측에 질문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주로부터의 질문에 대해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 종료 시까지로 접수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⁸⁷⁾

회사로서는 사전질문을 받더라도 총회 당일에 이루어진 질문에 회답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적절한 질문으로서 회답하지 않는데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답하는 순서로는 사전질문 중 의장이 선택한 질문에 관해 소개·회답한 후에 총회 당일에 이루어진 질문을 소개·회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 질문의 횟수와 글자 수의 제한

가상공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에 비하여 질문을 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입력·송신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질문 수가 많아지고 질문권을 남용하는 때도 증가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처리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 해석된다.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해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일한 주주가 할 수 있는 질문의 수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상공간 주주총회의 경우에 질문으로 인해 총회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질문의 선정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하고, 동일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수나 텍스트 방식에 의하는 경우 글자 수를 각 회사의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혼란방지를 위하여 소집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⁸⁾

87) 太田洋, 前掲論文[下], 43면.

88) 太田洋, 前掲論文[下], 43~44면. 2022년 일본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들은 질문의 개수와 문자수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였다. 질문 개수는 1~3개 정도이고 문자수는 100~400자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집통지에 기재된 숫자를 단순히 평균하면 질문 개수는 1.8개, 문자수는

라. 합리적인 질문선정기준을 포함한 의사운영규칙의 사전 작성 및 배포

현장주주총회에서 질문자의 지명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이것과 균형을 맞추어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 질문선정기준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거나 회답하지 않은 질문을 사후적으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⁸⁹⁾

그렇지만 현장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질문자를 지명할 경우 회사에 불리한 질문을 미리 봉쇄할 수는 없지만,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는 텍스트로 질문을 접수할 경우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질문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합리적인 내용의 질문선정기준을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총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주와의 대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질문선정기준의 개요를 소집통지에 기재하여 주주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은 유익하다.⁹⁰⁾ 총회 당일 질문의 선정작업을 외부변호사나 사내변호사에게 맡기고, 텍스트로 받은 질문을 총회 후에 모두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⁹¹⁾

질문선정기준으로는 심의사항과 관계가 있고, 많은 주주가 관심이 있는 질문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반면, 내부자정보, 다른 회사의 서비스나 분쟁에 관련된 것,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나 개인적인 공격에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 등은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⁹²⁾

1명이 제출할 수 있는 질문의 수, 문자 수, 송신기한 등 사무처리상의 제약이나 질문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미리 의사운영규칙에 반영하여 소집통지에 포함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⁹³⁾

마. 질문이 다수인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상 고려사항

텍스트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 설명의무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해석문제가 생긴다. 종전의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질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텍스트로 질문을 받게 되면 다수의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주주총회에서도 발언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 적당한

200자였다(小川周哉·太郎田耀, 前掲論文, 84면).

89) 太田洋, 前掲論文[下], 44면.

90) 太田洋, 前掲論文[下], 44면.

91)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304면 각주 126). 미국의 경우 질문에 관한 모범기준으로서 The Best Practices Committee for Shareowner Participation in Virtual Annual Meetings,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for Virtual Annual Shareowner Meetings (2018), pp. 5-6; Computershare, The Future of Shareholder Meetings is Virtually Here, pp. 10-11 등 참조.

92)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303면 각주 125).

93) 經濟産業省, 실시기이드, 21면.

시기에 질의를 중단시킨다. 다만, 양자의 차이점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질의응답은 회사의 관리 화면에서 주주가 한 질문이 텍스트의 순서대로 기록되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 목적사항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는데도 질의를 중단해도 좋은지가 문제된다.⁹⁴⁾

주주총회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질문의 합리적인 선별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수신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질문을 선별하여 회답하면 설명의무를 충족하게 될 것인가? 질의응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 결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ii) 결의사항의 각 의안에 대해 질문이 적어도 1~2개씩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한다. iii) 사전의 의결권행사 상황에 따라 찬성률이 낮은 의안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iv)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순서로 질문을 추출한다. v) 질의응답에 할애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둔다. vi) 찬성률이 낮은 의안이 있는 경우, 위임장권유쟁탈전이 있었던 경우, 중대한 불상사나 영업부진 등 경영실패가 질문된 경우, 기타 중요한 경영상의 과제가 주주의 관심사로 된 경우 등에는 설명책임이 요구되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하게 하여 가능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사전질문에 대한 회답과 연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⁹⁵⁾

바. 채택하지 않은 질문과 그에 대한 회답내용의 사후공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는 특히 텍스트 질문형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미리 입력된 설명청구의 내용을 의장 또는 의장의 보조자가 점검할 수 있으므로 의장이 회사에게 유리한 질문을 자의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의적으로 의사를 운영하면 총회결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⁹⁶⁾

주주총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주와의 대화를 심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총회 종료 후에 적절한 시기에 사후적으로 총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질문 가운데 주주의 관심이 높다고 추측된 질문에 대해서는 회답과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⁹⁷⁾

9. 동의를 처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동의를 다루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동의제도에 친

94) 倉橋雄作, 前掲論文[下], 46면.

95) 倉橋雄作, 前掲論文[下], 46~48면.

96) 취급되지 않았던 질문은 의사(議事)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총회장에서 주주의 질문으로 보지 않으며, 이사의 설명의무 이행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97)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304면.

숙하지 않으며, 독일은 그 운영 여부를 회사에 일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현장병행형과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별로 각각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⁹⁸⁾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다.

가.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동의

1)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 제안을 제한하는 것의可否

가) 의안제안권의 행사와 현장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동의를 ① 의사진행(심의의 중단·계속·진행, 연기·속행, 휴게·재개, 의장불신임, 결의방법 등)에 대한 동의(절차적 동의)와 ② 의안의 수정변경⁹⁹⁾을 요구하는 동의(실질적 동의)가 있으며, 양자 모두 주주총회에 현실로 출석한 주주만이 제출할 수 있다(즉, 서면 등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¹⁰⁰⁾ 또한 적법한 실질적 동의(의안)를 제안한 주주는 제안한 의안에 관해 설명 기회가 부여된다.¹⁰¹⁾

절차적 동의에 관해서는 이 중 의장불신임동의, 감사인 선임 동의(상법 제367조 제1항), 연기·속행동의(상법 제372조 제1항)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다. 그 이외의 의사진행상의 동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방법이 의장의 의사정리권(상법 제366조의2 제2항)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다고 해석되므로,¹⁰²⁾ 우선 동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바로 제기하여 총회에서 그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그 동의의 채택 여부는 현실적으로 출석한 주주(대리인을 포함)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¹⁰³⁾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동의에 대하여 결석으로 취급한다.¹⁰⁴⁾

실질적 동의(수정동의)에 관해서는 예컨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적법한 의안 또는 동의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은 때는 그 의안 또는 동의의 내용, 결

98) 권용수, 전게서, 150면; 김신영, 전게논문, 78면.
99) 수정동의를 소집통지 및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주주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수정의 허용범위가 있으며, 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된다(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會 編, 「類型別會社訴訟 I [第3版]」, 判例タイムズ社, 2011, 245면.
100) 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會 編, 前掲書, 235~237면.
101) 岩原紳作 編, 「會社法コンメンタル(7) 機關(I)」, 商事法務, 2013, 257면; 中村直人 編, 「株主總會ハンドブック[第4版]」, 商事法務, 2016, 383면.
102) 中村直人 編, 前掲書, 380면; 東京辯護士會會社法部 編, 「新・株主總會ガイドライン[第2版]」, 商事法務, 2015, 83-86면 참조. 다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회의체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정한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103) 東京辯護士會會社法部 編, 前掲書, 236-237면(또한 의장불신임 등 이외의 절차적 동의의 채택여부를 의장에게 의견을 물었을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논의 없이 의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中村直人 編, 前掲書, 393-394면.
104) 中村直人 編, 前掲書, 313면.

의의 내용에 따라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¹⁰⁵⁾ 다만 의안 또는 동의를 제안한 주주가 의장의 주의를 무시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가는 때는 주주총회 회의체로서의 원칙을 저버려서, 주주로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서 또는 의안 등의 제안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의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¹⁰⁶⁾¹⁰⁷⁾

나)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 제안의 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실시기이드에 따르면 주주에게 사전에 소집통지에서 ‘가상공간 출석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다루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기 바란다’라는 안내를 기재한 후에, 원칙적으로 동의에 대해서는 현장출석 주주로부터만 받는 것으로 하고,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 제안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¹⁰⁸⁾

이에 대해 ① 가상공간 출석주주는 동의 제안의 심리적 장애요소가 낮기 때문에 남용적인 동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¹⁰⁹⁾ ② 동의 제안을 한 주주에 대해 취지 확인이나 제안이유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예상되고, ③ 의장불신임동의나 휴식을 요구하는 동의 등 일부 절차적 동의에 대해서는 회의체로서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물리적으로 회의장에 있는 주주(현장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여 실시기이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¹¹⁰⁾가 있다.

반면 이에 대해 i)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해 대응할 수 있고, ii) 현장 출석주주와 가상공간 출석주주 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제안을 제한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¹¹¹⁾가 있다. 또한 동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문 등의 방법(시스템)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¹²⁾도 제기된다.¹¹³⁾

105) 東京辯護士會社法部 編, 前掲書, 288~290면; 中村直人 編, 前掲書, 397면.

106) 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會 編, 前掲書, 419-420면; 中村直人 編, 前掲書, 584-585면.

107)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ハイブリッド出席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と會社訴訟上の問題”, 「判例タイムズ」 第1482号(2021), 17면.

108)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8면.

109) ‘場’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불신임동의가 빈번하게 제출되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3면).

110) 松本加代 外, “座談會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對應 — 實施ガイドを踏まえて—”, 「商事法務」 第2225号(2020), 23-24면.

111) 柴田和史・神田秀樹, “電子株主總會への展望”,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144면; 大杉謙一, “株主總會の電子化とその審議の實質”,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100면 등. 또한 石井裕介・邊英基, “[5月7日追補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擴大を踏まえる定時株主總會の臨時的な召集通知の解説 — 經團連モデル —”, 「資料版 商事法務」 第434号(2020) 10면은 제안에 관계된 의안의 이유 설명을 예정하여 내장한 주주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있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12) 澤口實 編,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 商事法務, 2020, 60-61면.

주주총회에 입장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경우에 현장주주총회에 출석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제도 때문에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상공간 출석주주에 대해서는, 전술한 실시기이드가 전제로 하는 권리포기라는 이론구성으로부터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의 방지조치로서 입장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주주총회에서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제안을 제한하는 것이 결의의 하자로 되는지 여부는 재량기각(제379조)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¹¹⁴⁾

2)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 결의에서 취급

가)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행사와 동의의 결의에 있어서 취급

현장병행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수정동의가 제출될 경우, 사전에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의안 수정 시,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을 정족수에서 제외하면 가결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수정동의에 관한 문제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효력에 대해서는 결석설, 제도적 기권설, 기권설, 절충설 등으로 학설이 대립한다.¹¹⁵⁾ 우선 결석설은 전자투표한 의결권수를 수정안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 견해이다.¹¹⁶⁾ 제도적 기권설은 원안에 찬성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고, 원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¹¹⁷⁾ 기권설은 원안에 대한 찬부에 상관없이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를 수정동의안에 모두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¹¹⁸⁾ 한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결의에

113)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하는 주주가 의사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보면, 당해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는데 비해(일본회사법 제29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가상공간 출석주주는 실시기이드상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으므로 의안제안권(동법 제304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 회사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114)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8면.

115) 각 학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순석, 전계서, 157~158면 참조.

116) 元木 伸, "議決權の代理行使と書面投票等", 「商事法務」, 第937号(1982), 14면.

117) 안동섭,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비교사법」, 창간호, 1995, 237~238면; 우흥구,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사법행정」, 1990년 5월호, 21면; 西尾信一, "書面投票の實務的背景", 「商事法の解釋と展望」(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 有斐閣, 1984, 107면.

118)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를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7판]」, 삼지원, 2017, 717면; 권재열,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00), 267면; 김병연,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와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2000), 640~641면; 정래영, 전계논문, 335면; 森本 滋, "書面投票の制度的意義と機能", 「商事法の解釋と展望」(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 有斐閣, 1984, 128~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전자투표자의 의결권은 새도우보팅처럼 현장 주주총회 출석자들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견해도 제기된다.¹¹⁹⁾

생각건대, 주주의 의사에 충실한 해결방안이 타당하고 본다.¹²⁰⁾ 즉, 의결권 행사를 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서면에 주주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찬성한다’,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반대한다’, 또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 결의에 대해서는 기권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¹²¹⁾¹²²⁾

절차적 동의를 경우 학설상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당일 출석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는,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주주에게 사전에 이러한 동의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출석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남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절차적 동의의 내용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취급(출석의결권수에도 포함하지 않음)한다고 해석되며, 실무상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¹²³⁾

나)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행사 거부

일본의 실시가이드는 주주에게 사전에 소집통지 등에서 “당일 회의장의 출석자로부터 동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등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공간 출석자는 찬부의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가상공간 출석자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당일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의 취급에 근거하여, 기권 또는 결석으로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기재한 후에, 개별 처리가 필요로 한 동의를 결의할 때 가상공간 출석자는 실질적 동의에 대해서는 기권, 절차적 동의에 대해서는 결석한 것으로 취급한다.¹²⁴⁾

이러한 실시가이드의 견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¹²⁵⁾ 그러나 평시에 전술한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을 미리 주주에게 통지해 두면, 가상공간 출석을 굳이 선택한 주주는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론으로서는 이러한 취급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9) 山田尙武, “會社運營の電子化 - 株主總會の電子化を中心に -”, 「ジュリスト」 No. 1206, 2001, 90면.
 119) 정경영, “전자투표제도의 시행과 기업의 준비과제 -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상장협연구」 제57호, 2008, 174면;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 제16집 제1호(2005), 233면.
 120) 김재범,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한 주주총회의 운영”, 「경영법률」 제12집(2001), 193~194면.
 121) 동지,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2009), 396면.
 122) 김순석, 전계논문 I, 18~19면.
 123) 岩原紳作 編, 前掲書, 212면; 稻葉威雄 外 編, 「新訂版實務相談株式會社法(2)」, 商事法務, 2002, 681면[元木伸執筆部分]; 東京辯護士會社法部 編, 前掲書, 255면; 中村直人 編, 前掲書, 394면.
 124)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9면.
 125) 柴田和史・神田秀樹, 前掲論文, 143-144면.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급성 감염병 확대로 인하여 주주총회에 입장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현장 출석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제도로 인해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가상공간 출석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를 실시 가이드가 전제로 하는 권리포기로 이론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주식회사가 제안한 의안을 둘러싸고 특정한 주주와의 사이에 소위 위임장쟁탈전이 전개되는 등, 주주총회에서 대립이 팽팽한 의안이 심의될 때에는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동의를 결의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결의 하자로 될 수 있다.¹²⁶⁾

따라서 현장주주총회에 입장이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총회에서 동의를 결의에 있어서 가상공간 출석주주를 기권 또는 결석으로 취급하는 것이 결의의 하자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¹²⁷⁾

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의 동의를 취급

가) 동의를 처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이상, 가상공간 출석 주주에게 동의 제출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의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실질동의를 상법의 명문규정(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에 의해, 절차적 동의는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각각 주주총회 개최 중(개회선언으로부터 폐회선언까지의 사이)에만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실질동의를 대해 사전에 제출된 동의를 접수받는 것으로 하면, 상법이 주주제안권의 행사기한을 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로 정한(제363조의2 제1항, 제2항) 취지가 몰각된다. 절차적 동의는 그 성질상 관련 동의를 '미리'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주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과는 다르며, 실무상 사전에 제출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동의는 총회의 개최 중에 접수받는 것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장에게 의사정리권이 있기 때문에(제366조의2 제2항), 원칙적으로 동의에 대해서는 예컨대, 의장이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적 동의에 있어서도, 총회의 개최 중 언제라도 접수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는 시간대를

126) 澤口實 編, 前掲論文, 63면은 위임장권유쟁탈전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회사제안·주주제안을 묻지 않고) 찬부가 팽팽하여 가결이 불안한 의안이 있는 경우나, 절차적 동의와의 관계에서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병행형(출석형)의 이용의 시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127) 일본의 경우 2020년 2월 6일에 실시된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제출된 동의를 결의에 현장주주에 한정하는 회사가 복수였으며, 가상공간 출석주주도 동의를 결의를 하도록 한 회사도 존재하고 있다(경제산업성 실시사례집 32~33면).

예컨대, 소위 일괄상정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안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대 중 일정한 시간(예컨대, 질의응답의 시작으로부터 10분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의장불신임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흐름 중에 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장불신임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총회 개최 중에 어느 단계에서 제출된 경우에도 실무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¹²⁸⁾

나) 동의를 접수방법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도 출석주주로부터 동의를 접수방법은 질문의 접수방법과 마찬가지로 ① 앱(application)의 채팅 기능 등을 이용한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접수하는 방식, ② 앱이나 전화 등을 경유한 음성으로 인한 것을 접수하는 방식, 그리고 ③ ①과 ②를 병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동의(특히 실질동의)에 대해서는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비추어보면, 통상은 그 제출 주주에 대하여 제출한 동의의 내용에 관한 취지 확인이나 제출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주주로서 편리성을 감안하면 주주로서는 ②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렇지만 앱을 경유하여 음성으로 접수받는 경우에는 복수의 주주로부터 발언이 증폭됨으로써 빼먹고 들을 위험성이 있으며, 전용전화번호에 연결된 것을 접수받는 경우에는 전화의 집중에 의해 연결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석주주가 다수인 회사에서는 ①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를 접수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행사로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위한 웹사이트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⁹⁾

10.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가. 의결권의 대리행사

1)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강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시킬 수가 있는데(제368조 제2항 제1문), 이때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원본)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8조 제2항 2문).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128)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94~295면.

129)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95~297면.

회사는 널리 분산된 주식에 대하여 쉽게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주주는 의결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한다(통설).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2917 판결).

일본에서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주주가 대리인을 가상공간에 출석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현장병행형에 있어서 회사가 반드시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현장병행형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대리인이 가상공간으로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의 제출은 물론 의결권행사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는 대리인의 주주자격 확인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며, 또한 위장참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¹³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스스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가능하지 않은)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현장병행형에서는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상공간으로 출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주는 대리인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시켜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현장병행형에서 의결권행사의 대리인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368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¹³¹⁾ 일본의 실시가이드도 ‘대리인의 출석은 현장주주총회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¹³²⁾

일본의 경우 대리행사의 방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일본회사법 제298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때에 정하게 되며, 소집통지에 기록 또는 기재해야 한다(일본회사법 제299조 제4항)고 해석된다.¹³³⁾

EU의 권리지침 제8조는 회원국에 대하여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전 또는 주주총회 중에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메카니즘’을 거론하고 있다.¹³⁴⁾ 그리고 동 지침을 국내법화 한 독일주

130) 北村雅史, 前掲論文, 286면.

131) 권용수, 전게서, 146~147면; 김신영, 전게논문, 74면; 박준선, 전게논문, 145~146면.

132)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6면.

133) 北村雅史, 前掲論文, 286면.

134) Directive 2007/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exercise

식법 제118조 제1항은 회사는 주주가 전자적 통신방법에 의해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지 않고 또한 대리인 없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또는 정관에서 이사에게 수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즉, 여기서는 가상공간 출석은 주주 본인에 의한 출석(대리인은 현장주주총회 출석)이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¹³⁵⁾

2)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

텔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11조 (a)항 (2)호는 “이사회가 그 독점적 재량에 의해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 … 주주 및 대리인은 원격통신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원격통신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주 본인 또는 대리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회사가 실시하고 있을 것, ii) 원격통신의 방법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읽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 참가하고 주주에게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회사가 실시하고 있을 것, iii) 주주 또는 대리인이 주주총회에서 원격통신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의결권 행사 및 다른 조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한 후에 전자주주총회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텔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이 허용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유형에서는 의결권행사 대리인은 가상공간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대리행사를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리인을 가상공간에 출석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³⁶⁾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의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³⁷⁾

of certain rights of shareholders in listed companies, Art. 8 §1(c).

135) 北村雅史, 前掲論文, 285~287면.

136) 윤영신, 전계논문, 103면;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9면. 절차상 번거로움 및 사무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대리인의 가상공간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는 김신영, 전계논문, 74~75면.

137) 황현영, 전계논문, 34면.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대리인 자격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술한 Ⅲ.7.나. 참조.

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된다(상법 제368조의2 제2항). '타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제368조의2 제1항 제2문), 이러한 통지는 3일 전까지 회사에 도달하여야 한다(통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상법 제368조의2)를 하고자 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상공간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석주주 중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는 자는 현장 출석주주만이라는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위탁매매인이나 예탁기관, 신탁업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이들 기관은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대부분 가상공간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목적이 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현장주주총회를 통해서만 불통일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대리행사와는 달리 불통일행사를 하는 자는 주주 본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주주 본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임)를 할 때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다.¹³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불통일행사는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며, 사전투표인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단계에서는 실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주주가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사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불통일행사할 뜻을 통지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의 간접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의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주총회에서 불통일행사를 하는 경우 의결권행사 서면의 양식(회사로부터 송부된 의결권행사 서면은 불통일행사에는 대응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에 있어서 불통일행사의 양식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전자투표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 결의 시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¹³⁹⁾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가 현장주주총회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도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회사가 주주를 확인하고 의결권 수

138) 北村雅史, 前掲論文, 287면.

139) 北村雅史, 前掲論文, 287면.

를 합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불통일행사를 하려는 주주는 현장과 가상공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⁴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가상공간 주주총회에서만 불통일행사를 허용하면 될 것이다.

11.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가. 문제의 소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는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 기회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되듯이 가상공간 출석이 허용되면 사전의 의결권행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출석주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또한 출석주주가 증가한 경우에도 로그인 후에 컴퓨터를 이탈하여 결의 시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가 상당수 생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앞서 사전 의결권행사(서면투표, 전자투표)와 가상공간 출석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와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결권행사를 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한 때에는 사전 의결권행사는 무효로 된다.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가상공간 출석도 주주총회에 출석인 이상, 사전에 의결권행사를 한 자가 가상공간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권행사는 무효로 될 것이다. 다만, 현장출석 즉 물리적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입장한 경우와 자택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가상공간으로 출석하는 경우 간에는 출석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퇴출의 용이성 및 회사측으로부터 퇴출 확인의 용이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로그인하여 가상공간으로 출석한 주주는 로그아웃하거나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퇴석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 현장주주총회에서 중도퇴장과는 달리 가상공간으로 출석하고 있는 주주의 상태는 회사로부터나 다른 출석주주로부터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퇴장한 주주를 회사 측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⁴¹⁾

이러한 가상공간 출석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상공간 출석주주로서 사전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가지는 '출석'을 현장 출석과는 다르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의에서 정족수의 산정 및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다수결에 있어서 분모)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의 '출석'은 가상공간 출석의 경우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된다.¹⁴²⁾

140) 동지, 권재열, 전계 발표자료, 44면.

141) 岩村充・坂田繪里子, "わが國における株主總會電子化の可能性と課題",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71면.

142) 北村雅史, 前掲論文, 282~283면.

나. 가상공간 출석과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 후 결의 시까지 퇴장한 주주는 결의정족수나 출석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의 시에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주주총회의 결의 시에는 가상공간 출석주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의 로그인을 요구하게 된다. 즉, 제1단계의 로그인에 의해 주주는 가상공간으로 주주총회의 의사에 참가할 수 있고, 결의할 때에 제2단계의 로그인을 하도록 하며, 주주는 제2단계의 로그인을 함으로써 의결권행사에 관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공간 출석자가 사전에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었던 경우, 제2단계의 로그인을 함으로써 사전의 의결권행사는 무효로 된다. 또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서 2단계의 로그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의사진행방법은 일괄상정 방식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다.¹⁴³⁾

다음으로 로그인은 의사에 참가하는 때의 1회만으로 하고, 결의 시의 출석은 의결권행사의 시점(로그인한 상태로 결의 시에 찬부 의사표시를 한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¹⁴⁴⁾ 이 경우 찬부 어느 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한 주주도 존재하므로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결의 시에 의사표시에는 찬성·반대 외에 기권의 의사표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사전에 의결권행사를 한 경우, 결의 시에 찬부(기권)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사전의 의결권행사는 무효로 된다.¹⁴⁵⁾

이처럼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사를 가능한 존중하고 무효표를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현장주주총회와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로그인하지만, 로그인 시점에서는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주주총회 당일 결의시점에 새롭게 의결권행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¹⁴⁶⁾ 이렇게 하면 로그인은 하였지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전 의결권행사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주주를 위하여 출석형 로그인 화면 외에 참가(방청)형 전송화면을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¹⁴⁷⁾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만 서면투표를 하면 총회에 참가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프랑스상법전 R.225-85조 제3항). 다른 국가들은 명문의 규정 없이 실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사전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사전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143) 일괄상정과 분리상정에 대해서는 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제2판]」, 박영사, 2020, 231 ~232면 참조.
144) 經濟産業省, 실시기이드, 18면.

145) 北村雅史, 前掲論文, 283~285면.

146) 권용수, 전계서, 148면; 김신영, 전계논문, 81~82면; 허원준, 전계논문, 277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주주총회 실무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때 출석한 것으로 계산하고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92~293면).

147) 經濟産業省, 실시기이드, 18면.

한다.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전자주주총회 실시가이드는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사전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취급한다.¹⁴⁸⁾

우리나라의 입법안으로서 회사의 원활한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투표를 한 주주가 소집지 주주총회 혹은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 정관으로 달리 정하자는 견해가 제기된다.¹⁴⁹⁾

이렇게 규정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서면투표를 한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서면투표를 한 주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주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주주총회 참가에 대한 주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사전 의결권행사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전자주주총회에 참석만 하기를 원하는 주주도 있을 수 있다. 2020년 폐지된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판받은 것과 유사한 방안이다.¹⁵⁰⁾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의 실무관행처럼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통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전자주주총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사전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12. 위장(부정입력) 문제

위장은 현장주주총회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타인에게 송부된 소집통지나 의결권행사서면을 지참하여 주주총회 회의장에 나타난 자가 있는 경우, 접수대에서는 그자를 소집통지의 수신인인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가상공간 출석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현장주주총회 접수대에서 의결권행사 서면의 확인은 주주의 주소로 송부된 의결권행사 서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인간의 지각 작용을 매개로 하지만,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출석확인 ID와 패스워드만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러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전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때도 본인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주총회 출석의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에 추가하여 심의에서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장 위험이 주주총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현장주주총회에서는 소집통지나 의결권행사서면을 지참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라고 사실상 추정되며, 회사(접수담당자 등)가 그자가 소집통지 수신인인 주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간

148) 권용수, 전계서, 147면.

149) 권재열, 전계 발표자료, 44면.

150) 김순석, 전계논문 I, 17~18면.

파할 수 없었던 경우(회사 측이 선의인 경우), 주주로 위장한 자가 출석한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석된다.¹⁵¹⁾ 이는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확실하게 의결권행사서면을 동봉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가상공간 출석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된 소집통지에 기재된 ID와 패스워드에 의해 로그인 하므로, 그렇게 하여 가상공간으로 출석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라고 사실상 추정하여도 좋을 것이다.¹⁵²⁾

위장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확실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할 수 있다면(예컨대, 2단계 인증이나 블록체인의 활용 등), 회사의 규모나 가상출석주주의 수에 따라 그러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³⁾

13.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의안의 설명, 주주의 질문 및 의견의 표명, 수정동의 등의 제출, 회의체로서의 실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이다. 주주총회는 주주와 경영자, 주주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더욱이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정리권한, 질서유지권(상법 제366조의2 제2항)은 참가자와 회의장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독될 수 있지만, 전자주주총회 참가자는 의장의 공평한 의사진행을 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¹⁵⁴⁾

현장주주총회에서는 총회의 참가자와 의장이 함께 마주 보는 장으로서 회의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장의 공유를 전제로 하여 총회 의장에게 회의에 관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의장의 재량은 참가자와 장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감시되고 실질적으로 제약된다. 이에 반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참가자가 가상공간 회의장을 볼 수 없다.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의장이나 의장의 보조자들은 로그인 상황이나 질문메시지의 도착 상황을 통하여 회의장을 볼 수 있지만, 로그인하고 있는 개별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의 상황을 볼 수 없다. 이것은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허가하는 등(cherry picking의 문제) 의장의 불공정한 의사운영에 대한 출석주주의 감시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불공정한 의사운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현장주주총회의 상황이 가상공간 주주총회 장소에 전달될 수 있다면, 현장주주총회 참가자에게 불공정한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역할을 기대할 수

151) 前田雅弘·北村雅史, 「會社法實務問答集 III」, 商事法務, 2019, 57면.

152) 北村雅史, 前掲論文, 281~282면.

153)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7면.

154) 神作裕之, “株主總會のIT化”, 「民商法雜誌」 第126卷 第6号 (2002), 798~800면; 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3면.

있을 것이다.¹⁵⁵⁾ 반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이외의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주주총회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¹⁵⁶⁾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¹⁵⁷⁾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해 의무화하는 견해도 있으나,¹⁵⁸⁾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⁵⁹⁾

이처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회의장을 주주와 의장이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의장의 재량권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의장이 회사에 유리한 태도를 보이는 주주에게만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의사진행의 불공정은 결의방법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은 현장주주총회 이상으로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가 운영되도록 총회의사운영규칙 등을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¹⁶⁰⁾

14.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통신장애

1) 통신장애에 대한 사전대책

실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통신장애로 인해 가상공간 출석 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우려이다.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가상공간 참가주주는 주주총회에 회사법상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가상공간 참가주주가 주주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가상공간 출석주주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장애에 의해 대부분의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주주총회의 심의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술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물론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도 미리 통신장애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155) 岩村充·坂田繪里子, 前掲論文, 72~74면.

156) 자세한 내용은 김순석, "2011년 개정상법상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66(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2~18면 참조.

157) 김순석, 전제서, 38~39면.

158) 허복녕·권한용, 전제논문, 159면.

159) 권중호, 전제논문, 124면; 윤영신, 전제논문, 100면.

160) 윤영신, 전제논문, 99면.

특히 전화회의 방식이 아니라 웹회의 방식으로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통신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통신장애에 대비한 대응책으로서 구체적으로 i) 회사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보안대책, ii)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가상공간 출석주주를 위한 로그인 화면에서 가상출석을 선택한 때에 통신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뜻의 고지, iii)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주주총회에 인터넷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환경(통신속도, OS나 애플리케이션 등) 및 접근을 위한 수순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¹⁶¹⁾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iv) 백업으로 되는 통신수단(웹회의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웹회의 시스템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에 대비한 백업으로서 전화회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가상공간 출석주주도 회사법상 '출석'하고 있다고 취급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통신장애가 생겨서 대부분의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주주총회의 심의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다.¹⁶²⁾

2) 통신장애에 의한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의결권행사가 통신장애 때문에 제한된 상태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결의의 하자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기된다. 첫째, 당해 통신장애가 회사 측과 주주 측 어느 쪽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했다거나, 그 원인에 대해 귀책사유가 회사 측과 주주 측의 어느 쪽인가 등에 의해서 결의의 하자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이다.¹⁶³⁾ 둘째, 일부 주주에 대해 통신장애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주식회사가 불측의 통신장애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공시하고, 통신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한 때는 결의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¹⁶⁴⁾이다.¹⁶⁵⁾

161)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3면.

162)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157~160면.

163) 柴田和史·神田秀樹, "電子株主總會への展望",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147~148면; 北村雅史,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と株主の議事參加權",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商事法務, 2020, 275~277면에서도 회사 측의 사정으로 버츄얼 출석주주가 의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결의방법의 법령위반)로 된다고 한다.

164) 권용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7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23), 170면; 동지, 김신영, 전계논문, 69면; 大杉謙一, "株主總會の電子化とその審議の實質",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90~91면. 澤口實 編,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第2版]」, 商事法務, 2021, 159면은 개별적인 사정(통신장애의 원인이나 그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의결 권수 등)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일본의 실시가이드는 두 번째의 견해를 채택하여 “회사가 통신장애 위험을 사전에 주주에게 고지하고, 또한 통신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취한 경우에는 회사 측의 통신장애에 의해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¹⁶⁶⁾

여기서 ‘합리적 대책’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예컨대, 우선 전술한 통신장애 대책 i) 내지 iv)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¹⁶⁷⁾ 향후 실무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사가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에 의해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었던 때에 ‘결의의 하자’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이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¹⁶⁸⁾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한다는 선택지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취하면, 회사의 통신장애에 따라 가상공간 출석주주 모두가 주주총회의 심의 및 결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된 의결권 부분을 포함하여 현장주주총회만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가 가결되어 성립하면, 그 결의에 ‘결의하자’가 존재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재량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⁹⁾

평상시처럼 주주총회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라면, 주식회사가 통신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주주에게 고지하고 또한 통신장애의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에 있어서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전술한 고지에 의해 현장 출석주주와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굳이 가상공간 출석을 선택한 때는, 그 의결권행사가 통신장애에 의해 제한되더라도 실시가이드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권리포기의 이론구성을 채택하면 결의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회의장에 입장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후에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는 현장 출석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제도로 인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주주에 대하여 전술한 권리포기 이론으로 정당화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공간 출석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전달의 즉시성과 쌍방향성을 결여하여 회의체로

실시할 때 통신장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165)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6면.

166)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4면.

167) 전술한 III.13.가.1) 참조.

168) 田中巨 外, 前掲 座談會 25면[田中巨 發言] 참조. 백업에 의해 통신장애가 회복되지 않는(즉, 회사로서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재량기각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된다(北村雅史, 前掲論文, 277면 참조).

169) 田中巨 外, 前掲 座談會 25면[田中巨 發言]; 經濟産業省, 실시가이드 14면 참조.

서 일체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결의하자로 된다는 견해가 도출될 수 있다.¹⁷⁰⁾

그렇지만 i) 전자주주총회 실무에 비추어보면,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전체의 이익 증가를 위하여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주주총회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ii) 사전등록제도에 의해 출석할 수 없게 된 가상공간 출석주주는 현장주주총회 형식만으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설명에 근거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주주총회에 대한 입장 제한이 허용된 경우에 사전등록제도 아래에서 출석에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한 주주평등원칙이 작동하며,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얻지 못했을 다른 권리에 대해, 추첨으로 당선된 현장 출석주주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가지고 결의자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¹⁷¹⁾

결국 코로나 19 감염확대 방지조치로서 주주총회에 입장 가능한 주주를 제한한 후에 개최된 총회에서, 가상공간 출석주주가 통신장애의 발생에 따라 의안 결의 시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결의하자로 되는지 여부는 재량기간(제379조)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¹⁷²⁾¹⁷³⁾

3) 통신장애에 대한 입법적 대응

독일주식법은 정관으로 주주가 주주총회 장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모든 권리 또는 개별적 권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이사회에 수권한다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118항 제1항 제2문).¹⁷⁴⁾

한국, 일본처럼 주주총회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결의취소의 소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주식법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한 규정인 독일주식법 제118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된 권리가 기술적 장애로 인하여 침해가 야기된 경우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243조 제3항 제1호, 제118조 제1항 제2문).¹⁷⁵⁾

170)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6면.

171)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전등록제도에 의한 입장제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예컨대, 경영진에게 적대적인 일부 주주를 배제하기 위하여 현장 출석주주 수를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타당하지 않다.

172)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20년 6월에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한 회사는 통신장애 대책으로서 사전등록제를 채택하여 당해 등록자 수를 바탕으로 한 서버의 구축, 복수의 인터넷 회선의 준비, 총회 당일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기술담당자의 대기 등, 각종 통신장애 대책을 강구하였다(經濟産業省, 실시사례집 21~23면).

173)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前掲論文, 16~17면.

174) 이형규 역,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5, 155면.

독일처럼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제공 회사에게 위탁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만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의하자로 되지 않는다. 통신장애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자주주총회의 채택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독일주식법처럼 입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본다.¹⁷⁶⁾

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통신장애

1)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 하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의안의 결의시에 통신(영상뿐만 아니라 음성도 포함)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¹⁷⁷⁾ 또한 의안 결의시에는 회사와 출석주주 간에 정보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되더라도, 총회 의안의 설명 및 질의응답의 대부분이 대다수의 주주로서는 회사 측 또는 출석주주로부터 정보전달이 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때는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문제된다.¹⁷⁸⁾

2) 독일

독일은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2020년 3월 27일 제정하여 2022년 8월 말까지 한시법으로서 「민법, 파산법, 형사소송법에 있어 코로나 19 유행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이하 「코로나19 대응법률」이라한다」을 시행하였다. 동 법률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¹⁷⁹⁾ 즉, i) 주주총회 전체에 대해 영상과 음성의 송신이 이루어질 것, ii)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사전투표 또는 온라인으로 참가가 인정되는 것), iii) 주주에게 전자적 통신방법에 의해 질문할 기회가 부여될 것, iv) 주

175) 독일의 전자주주총회는 기술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경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Germany: The Act on the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areas of insolvency,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 - Main points of interest and preliminary analysis -", p. 7, <<https://www.freshfields.de/4962ff/globalassets/our-thinking/campaigns/coronavirus-alert-centre/pdfs/updated-english-language-briefing-german-covid-19-mitigation-law-06042020.pdf>>).

176) 北村雅史,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と株主の議事參加權",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商事法務, 2020, 277면.

177) 田中巨外, 前掲座談會 25면[田中巨發言] 참조.

178) 太田洋, 前掲論文[上], 21면.

179) 동 법률에 대한 소개는 권상로, "독일의 코로나19 팬데믹 관계법상의 비추얼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집 제3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09면 이하 참조.

주총회에 물리적으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 등이다.

독일의 코로나19 대응법률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참가와 의결권행사에 따르는 기술적 혼란에 관련하여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권리를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독일주식법 제243조 제3항 제1호를 더욱 진전시켰다. 즉,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독일주식법의 규정(동법 제118조 제1항)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코로나19 대응법률의 조항(동법 Art. 2 §1(2))의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의로 하지 않는 한’(중과실 제외)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Art. 2 §1(7)).

2022년 7월 20일 제정하여 7월 27일 발효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협동조합, 파산 및 기업 구조조정법의 변경에 관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virtueller Hauptversammlungen von Aktiengesellschaften und Änderung genossenschafts- sowie insolvenz- und restrukturierungsrechtlicher Vorschriften)에 의하여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독일주식법 제118a조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독일주식법상 항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었다. 독일주식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코로나19 대응법률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배제되지만, 이사회의 구성원(및 공증인)은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현장 개최가 완전하게 배제되지는 않는다.

동 법률은 다음 8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 즉, i) 주주총회 전체에 대해 영상 및 음성의 송신이 이루어지고, ii) 주주가 전자적 통신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전자적 출석, 전자적 우편 투표 및 위임장 수여), iii) 회의장에 전자적으로 연결된 주주에게 비디오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제출하고 선거에 대해 지명할 권리가 제공되며, iv) 전자적 통신을 통해 제131조에 따른 정보에 관한 권리가 제공되며, v) 경영이사회가 제131조(1a) 문장 1에서 제공된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경영이사회의 보고서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회의 7일 전까지 주주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vi) 주주에게 전자통신을 통해 제130a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제공되고, vii) 회의장에 전자적으로 연결된 주주에게 제130a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비디오통신을 통해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가 제공되며, viii) 회의장에 전자적으로 연결된 주주에게 전자적 통신을 통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독일주식법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한 규정인 독일주식법 제118a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된 권리가 기술적 장애로 인하여 침해가 야기된 경우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독일주식법 제243조 제3항 제3호, 제118a조 제3항 제3문).

3) 일본

일본은 2021년 6월 9일 제24회 정기국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21년 법률 제70호)(이하 “산경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6월 16일 공포되고, 동 법률에서 ‘장소를 정하지 않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과 더불어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한 장소를 정하지 않은 주주총회에 관한 성령」(2021년 법무성·경제산업성령 제1호)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경제산업성령·법무성령에서 정한 요건(이하 ‘성령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장관 및 법무장관의 확인을 거쳐 ‘장소를 정하지 않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산경법 제66조 제1항). 이처럼 일본은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산경법의 개정을 통하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경제산업성령·법무성령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적용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i) 장소를 정하지 않은 주주총회의 의사에 있어서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되고 있는 통신방법에 관한 사무(성령 제1조 제2호 및 제3호의 방침에 근거한 대응에 관한 사무를 포함)의 책임자를 두고 있을 것(동조 제1호)
- ii) 통신방법에 관한 장애대책에 대해 방침을 정하고 있을 것(성령 제1조 제2호)¹⁸⁰⁾
- iii) 통신방법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장애가 있는 주주의 이익확보를 배려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을 것(성령 제1조 제3호)
- iv) 주주명부에 기재·기록되어 있는 주주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성령 제1조 제4호).

그렇지만 산경법은 이러한 성령요건에 관한 경제산업장관 및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아 이루어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총회결의취소 사유를 독일주식법처럼 일정한 사유로 제한한다는 취지를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취소될 것인지 여부는 회사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른다고 본다.¹⁸¹⁾ 일본 산경법에 독일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

180) 통신장애 대책방침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 다음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i) 통신방법의 장애대책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강구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ii) 통신방법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 대체수단을 준비하는 것, iii) 통신방법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iv)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산경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회사법 제317조 괄호(총회의 연기·숙행)의 결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 등이다(經濟産業大臣·法務大臣, “産業競争力強化法第66條第1項に規定する經濟産業大臣及び法務大臣の確認に係る審査基準” 第2, 2021. 6. 16.,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keizaihousei/virtual-only-shareholders-meeting_review-standard.pdf>).

181) 白岩直樹, 前掲論文, 10면.

가 충분한 통신장애 조치나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총회에서 의안에 관한 설명 및 이에 관한 질의응답의 대부분이 대다수 주주로서는 회사측 또는 출석주주 측으로부터 정보전달이 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때는 해당 의안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¹⁸²⁾

4) 통신장애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주총회의 연기, 속행, 예비일의 지정

전자주주총회가 통신장애에 의해 결의를 진행하거나 적절한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의사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여야 한다. 연기나 속행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고(제372조 제1항), 의장이나 이사회가 연기와 속행을 결정할 수는 없다.¹⁸³⁾ 계속회¹⁸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¹⁸⁵⁾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전도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¹⁸⁶⁾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은 의안 자체에 대한 결의가 아니고 일종의 의사진행에 관한 결의이므로, 소집통지에 의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주의 동의 및 제청을 통해 의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¹⁸⁷⁾

일본은 전자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사유를 제한하는 독일주식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산경법에서 통신두절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상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된 통신방법의 장애에 의해 그 의사진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 총회의 의장이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주총회결의를 취득하여 두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총회의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개정 산경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대체 적용되는 회사법 제317조).¹⁸⁸⁾

따라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의장의 시나리오에서 개최선언 직후에 “통신방법의 장애에 의해 의사진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의장에게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을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도록 준비하여 이러한 결의를 취득하여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일임 결의를 취득하여 두면 예컨대, 그 후 시스템 다운 등에 의해 통신두절이 생긴 경우에도

182)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2면.

183) 수원지방법원 2007. 6. 25.자 2007카합200 결정.

184)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하기 위하여 후일 개최된 총회를 말한다.

185) 이철승, 회사법강의, 534면.

18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87) 김지평·조영대, “COVID-19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쟁점”, 「BFL」 제103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15면; 권순일 편, 「주식 상법[회사 3](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115면.

188) 白岩直樹, 前掲論文, 10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산경법은 연기 또는 속행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법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지만, 적어도 2주간 이내라면 의장의 결정에 근거하여 계속회를 결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해석된다.¹⁸⁹⁾ 우리나라 판례는 본래 회의일로부터 5일 후에 계속회를 개최하였으나 결의가 되지 않아 다시 7일 후로 계속회를 개최하는 것을 2회 반복하여 총 3회의 속행을 함으로써 본래 회의일로부터 19일 만에 가결된 경우에 대해 적법하다고 본다.¹⁹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이 기동적으로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다(예컨대, 당초 총회 회일의 익일에 계속회를 개최하는 것도 용이할 것이다). 개회 선언 직후에 계속회 개최결정에 관한 의장의 수권결의를 해 두면, 통신장애에 의해 의사진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수권결의에 근거하여 계속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문제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미리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회 회일의 익일을 예비일로 설정하여 두고, 통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일의 소정의 시간에 계속회(개회선언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렇게 해두면 총회 당일에 통신두절에 의해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총회가 유회된 경우에도, 다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일에 적법하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당해 예비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모든 주주에게 주지되기 때문에 주주의 보호를 흠결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의장불신임 동의를 가결되어 새로운 의장이 선출된 경우에도 시스템 호스트 권한을 회사측으로부터(동의제출 주주 측의) 새로 선임된 의장에게 이양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의장불신임 동의를 의미로 실질적으로 상실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장불신임 동의를 제출하는 주주가 당해 동의와 더불어 신임 의장에 의한 계속회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제출하면, 전자가 가결되면 후자도 가결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이다.¹⁹¹⁾

통신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방안으로서는 전술한 독일주식법처럼 전자주주총회의 결의취소 사유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산경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의사운영에 지장이 생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계속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일임을 하는 결의를 하며, 전자주주총회가 처음부터 개최되지 못

189) 일반적으로 계속회는 원래 총회와의 동일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2주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권순일 편, 전거서, 116면;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編, 「新版注釋會社法(5)」, 有斐閣, 1986, 248면; 岩原紳作 編, 「會社法コンメンタール 第7卷 機關(1)」, 商事法務, 2013, 288~289면).

19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91)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前掲書, 283~285면.

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집통지에서 주주총회 예비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⁹²⁾

15. 입법안 검토

가. 조수진 의원안[현장병행형(출석형) 및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1) 개정안의 내용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9호, 2022. 1. 25.)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제2항). 또한 회사는 제36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제368조의4 제2항).

2) 개정안의 검토

가)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1) 전자주주총회 도입요건

동 입법안은 현장병행형(출석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 중에서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이를 장려해야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다.

192) 김신영, 전제논문, 70면.

(2)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식

동 입법안은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원격영상회의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크므로 통신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더 높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사유나 최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며, 음성만을 전달하는 방식보다 회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¹⁹³⁾

미국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음성만으로 개최하는 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특정한 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음성 전달방식을 통한 개최도 허용하고 있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방식으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391조 제2항). 따라서 주주총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만을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때 이미지(자료, 발언하는 이사 사진 등)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⁴⁾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방식은 음성, 동영상, 양자 혼합 등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업들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출석대상을 이사 등으로 확대 필요

전자주주총회에 주주가 '전부' 참석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현장주주총회가 없으므로 주주 외의 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처럼 주주의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참석하는 경우 총회에 참석하는 이사, 집행임원, 외부감사인 등도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일본 회사법시행규칙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으로서 주주총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

193) 권용수, 전계서, 143면; 김신영, 전계논문, 65면.

19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4549호 -", 2022, 2면.

소를 열거하면서, 주주총회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회계감사인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경우의 해당 출석방법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72조 제3항 제1호). 출석방법으로서 정보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확보된 상황을 근거로 한 사실(동 시스템의 사용)도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¹⁹⁵⁾ 이 규정에 따라 주주 외 이사 등의 전자적 출석이 인정된다.

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제2항),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있다.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개최사유를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 일본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도 개최사유에 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나.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김병욱 의원안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 2020. 8. 4.)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개정안 제364조의2 제1항),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개정안 제364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가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하여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주가 의결권행사를 대리하게 할 때 대리권의 증명방법으로서 기존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함으로써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개정안 제368조 제2항).

195) 江頭憲治郎·中村直人, 「論點体系 會社法 2」, 第一法規, 2012, 528면; 相澤哲·葉玉匡美·郡谷大輔, 「論點解説 新·會社法」, 商事法務, 2006, 472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368조의5 제3항).

또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주주(“원격지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64조의2 제5항).

2) 개정안의 검토

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방식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방식은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Opt-in)과, 아니면 정관에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Opt-ou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주주총회 배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Opt-out 방식).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362조) 주주총회를 어떠한 형태로 개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관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가 그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현장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상법 제364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전자위임장의 도입

개정안 제368조 제2항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임장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위임장의 서면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전자위임장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당한 입법으로 본다.

다) 전자주주총회 운영사항의 입법방식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368조의5 제3항).

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과 유사한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경우 IT가 발달한 회사는 자체적인 기술로 운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기술개발이나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은 만큼 특정한 운영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 소집통지 수단에 관한 김병욱 의원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2021. 10. 19.)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수단으로 현행 서면과 전자문서 이외에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63조 제1항 및 제3항)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정의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도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이다.¹⁹⁶⁾ 따라서 전자문서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소집통지의 수단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 가운데 소집통지의 수단과 관련된 것은 주소(상법 제352조 제1항 제1호)이며,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한 회사에 한하여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52조의2 제2항). 따라서 일반 주주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집통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동법 제363조 제1항), 주주의 변동성이 높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전자문서를 소집통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¹⁹⁷⁾

196)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2017, 9면.

19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2881호 -", 2021, 1~2면.

IV. 결 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실현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주주총회제도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쉽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주주총회의 운영 내지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은 촉진되더라도 주주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각 회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방법, i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의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후에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iii)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전체를 전자화하는 방법(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등 세 가지 가운데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주주총회의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소집지 규정의 개정,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출석과 퇴장,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를 처리,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입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주주총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7판]」, 삼영사, 2017.
- 권상로, “독일의 코로나19 팬더믹 관계법상의 버추얼주주총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집 제3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권순일 편, 「주식 상법[회사 3](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권용수,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 _____,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7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23).
- 권재열, “2020년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92호(대한변호사협회, 2020).
- _____,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방향”, 「디지털 경제와 상사법의 과제」(한국상사법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3. 6. 30.).
- 권중호, 패널토론요지,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2004).
- _____, “버추얼주주총회의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05).
-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6판]」, 박영사, 2022.
-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전자화시대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2004).
-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2011년 개정상법상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66(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 _____,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2017).
- _____,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총회제도의 법률적 검토」, 코스닥협회, 2018.
- 김신영,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21).
- 김지평·조영대, “COVID-19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쟁점”, 「BFL」 제103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 박상근, “인터넷과 주주총회”,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2001).
- 박준선, “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31집 제4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2017.
- 서완석,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주총회 형태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윤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16).
- 이형규 역,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5.
- 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제2판]」, 박영사, 2020.
-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 _____, “IT와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5).
- 정준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한국법정책학회, 2020).
-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2).
- 조종일·신동일, “온라인 주주총회”, 「BFL」 제114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계Ⅱ[제4판]」, 법문사, 202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LCA ISSUE PAPER」 Vol. 77(2022).
- _____,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49호 -”, 2022.
- _____,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22.
- _____,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881호 -”, 2021.
- 허원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_____,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6권 제3호(한국기업법학회, 2022).
-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3).
- 황현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예탁결제」 제124호(한국예탁결제원, 2023).

2. 일본문헌

江頭憲治朗, 株式會社法[第8版], 有斐閣, 2021.

- 江頭憲治郎・中村直人, 「論點体系 會社法 2」, 第一法規, 2012.
-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場所の定めのない株主總會 — 制度説明資料 —”, 2023. 3. 2).
- _____,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施ガイド」, 2020. 2. 26.
- 大杉謙一, “株主總會の電子化とその審議の實質”,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 稻葉威雄 外 編, 「新訂版實務相談株式會社法(2)」, 商事法務, 2002.
- 東京辯護士會會社法部 編, 「新・株主總會ガイドライン[第2版]」, 商事法務, 2015.
- 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會 編, 「類型別會社訴訟 I [第3版]」, 判例タイムズ社, 2011.
- 尾崎太, “株主總會へのインターネット出席の導入”, 「經營法友會リポート」 第558号(2020).
- 弥永眞生, “株主總會のIT化”, 「ジュリスト」 No. 1271 (2004).
- 弥永眞生 外 編, 「ゼミナール會社法現代化」, 商事法務, 2004).
- 白岩直樹, “産業競争力強化法に基づく場所の定めのない株主總會(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に関する制度の解説”, 「商事法務」 第2269号(2021).
- 保坂泰貴,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における株主總會資料の電子提供措置等 — 産業競争力強化法施行令および省令の改正 —”, 「商事法務」 第2305号(2022).
- 北村雅史,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と株主の議事参加權”,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商事法務, 2020.
-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編, 「新版注釋會社法(5)」, 有斐閣, 1986.
- 相澤 哲・細川 充, “株主總會等”, 「立法擔當者による新・會社法の解説(相澤 哲 編)」, 別冊商事法務 No.295 (2006).
- 相澤哲・葉玉匡美・郡谷大輔, 「論点解説 新・會社法」, 商事法務, 2006.
- 商事法務研究會 編, 「株主總會白書(2020年版)」, 「商事法務」 第2256号(2021).
- _____, 「株主總會白書(2022年版)」, 「商事法務」 第2312号(2022).
- 石井裕介・邊英基, “[5月7日追補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擴大を踏まえる定時株主總會の臨時的な召集通知の解説 — 經團連モデル —”, 「資料版 商事法務」 第434号(2020).
- 小川周哉・太郎田耀,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現状と課題”, 「資料版/商事法務」 第467号(2023).
- 松本加代 外, “座談會 ハイブリッド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對應 — 實施ガイドを踏まえて—”, 「商事法務」 第2225号(2020).
- 柴田和史・神田秀樹, “電子株主總會への展望”,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 神作裕之, “株主總會のIT化”, 「民商法雜誌」 第126卷 第6号 (2002).
- 岩原紳作 編, 「會社法コンメンタール 第7卷 機關(1)」, 商事法務, 2013.

- 岩村充・坂田繪里子, “わが國における株主總會電子化の可能性と課題”,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 前田雅弘・北村雅史, 「會社法實務問答集 III」, 商事法務, 2019.
- 田中亘, 「會社法[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2021.
- 田中亘 外, “<座談會> 本年の實務と殘された課題 ハイブリッド‘出席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を檢討する”, 「ビジネス法務」 第20卷 第12号(2020).
- 中川雅博, “バーチャル株主總會實施事例に見る實務對應と留意点 - 出席型バーチャル總會, バーチャルオンリー總會 -”, 「資料版/商事法務」 第452号(2021).
- 中村直人 編, 「株主總會ハンドブック[第4版]」, 商事法務, 2016.
- 倉橋雄作, “バーチャルオンリー總會の實務對應[下] - 實施企業へのヒアリングを踏まえて -, 「商事法務」 第2286号(2022).
- 村充・坂田繪里子, “わが國における株主總會電子化の可能性と課題”, 「電子株主總會の研究(岩村充・神田秀樹 編)」, 弘文堂, 2003.
- 太田洋,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實務對應[上], 「商事法務」 第2259号(2021).
- _____, “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總會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實務對應[下], 「商事法務」 第2260号(2021).
- 太田洋/野澤大和 外 1人 編,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法的論點と實務」, 商事法務, 2021.
- _____, 「デジタル株主總會の法的論點と實務」, 商事法務, 2023
- 澤口實 編,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 商事法務, 2020.
- _____, 「バーチャル株主總會の實務[第2版]」, 商事法務, 2021.
- 坂田大吾・秋山沙織・加賀谷友行, “ハイブリッド出席型バーチャル株主總會と會社訴訟上の問題”, 「判例タイムズ」 第1482号(2021).

3. 영미문헌

-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Inc.,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1 full-year facts and figures,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vsm-2021-full-year.pdf>.
- _____,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2 mid-year facts and figures, <http://www.broadridge.com/_assets/pdf/broadridge-shareholder-meetings-report-2022.pdf>.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Germany: The Act on the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areas of insolvency,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 - Main points of interest and preliminary analysis -", <<https://www.freshfields.de/4962ff/globalassets/our-thinking/campaigns/coronavirus-alert-centre/pdfs/updated-english-language-briefing-german-covid-19-mitigation-law-06042020.pdf>>

Directive 2007/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of shareholders in listed companies.

Edward P. Welch, Andrew J. Turezyn & Robert S. Saunders,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5th ed., Wolter Kluwer, 2008.

Mark T. Wilhelm & Danielle Clifford, "Zooming in: Analyzing Annual Meeting Format Changes Amidst a Global Pandemic", 80 Wash. & Lee L. Rev. Online 227 (2023).

Abstract

Legal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nto Korea

Kim, Soon-Suk

The realiza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or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makes it possible will not easily bring a complete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hareholder meeting system. There will be several options for utilizing the performance of digital technology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regards, even if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ccelerated, it is desirable to design flexible system so that each company can make its own choices, except for minimum regulations for shareholder protection.

It needs to have each company choose an appropriate method of hol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mong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considering its own business circumstances. For example, i)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atten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i)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participat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simultaneously, iii) method of holding virtual only shareholder meetings without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On the other hand, if the direc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epends 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ime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entire institutional structure surround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to introduc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nto Korea. It analyzes the types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a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governing rules of introduc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authority to conven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criteria for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the permiss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method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meeting place,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hat are considered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nd exit of meetings, verification of principal and agent, guaranteeing appropriate right to question, handling proposed agenda during meeting, exercising voting rights by proxy and right not to cast all the votes in the same way, treatment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 advance, problem of fraudulent log-in, securing fairness in the operation of the meeting, communication failures and defects in resolutions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posals a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issues covered in this paper, it suggests to discuss ways to improve current inspector of elections system, because it seems to become more important for fair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f virtual shareholders system is introduced.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review legal measures plan to provide 'all' of reference documents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n an electronic way (provisions of supplying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aterials electronically), which were implemented since September 2022 in Japan.

Key Words :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llowing only attendanc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llowing participation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Virtual Only Shareholder Meetings, Proxy by Electronic Means, Inspector of Elections